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22. 강동오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2023. 3. 24.
- 다. 상정일자: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3.3.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강동오 의원】

가.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빠르게 활용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임. 이에 마포구에서 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형 개인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동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2)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제8조)
- 4)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9조)

다. 참고사항

O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2조

O 입법예고(2023, 3, 22, ~ 3, 27.) 결과: 의견 없음

O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강동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빠르게 활용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임. 이에 마포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편리하게 이동형 개인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 「도로교통법」이 개정됨(2020.12.10. 시행)에 따라 제2조 제19의2호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적 정의를 적용하였고, 마포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임.
- 한국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2016년 6만 대에서 2017년 7만5천대로 20%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성장률을 토대로 2023년에는 20만대 이상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안전사고도 이와 비례하여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에 이르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연도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7년	117	4	124
2018년	225	4	238
2019년	447	8	473
2020년	897	10	985
2021년	1,735	19	1,901

○ 또한 마포구도 2018년 43건, 2019년 54건, 2020년 42건중 사망사고 가 1건인 것을 종합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안전계 획 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의 책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조항별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제2조 제19의2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적 정의를 적용하였고, 안전교육, 안전문화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 안 제3조(책무) :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사업추진 등) :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 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7조(안전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 식개선,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위하여 안 제5조~안 제7조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

다.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20개 자치구 제정 시행
- 구로, 마포, 서대문, 송파, 용산 미시행 자치구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의 주요 이동수 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길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엄격한 관리통제와 구민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8. 기 타: 없 음

[별표 1]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 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 1. 전동킥보드
- 2. 전동이륜평행차
-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